

협력회사 윤리규범

제 1 장 총 칙

1. 목 적

- 본 윤리규범은 회사와 협력업체 간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 관계의 구축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- 본 윤리규범의 적용은 협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3. 규범의 운영

- 협력회사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서는 (주)파트론의 인사총무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.
- 협력회사 대표자 혹은 (주)파트론과의 거래에 대한 실무책임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, 본 윤리규범을 포함한 (주)파트론의 일체의 윤리 경영정책을 준수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제 2 장 직무수행 원칙

1. 직무수행 자세

- 협력회사 임직원은 (주)파트론과의 업무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.
-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은 (주)파트론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번영을 추구하며,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2. 거래관계의 투명성

-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.

3. 금지사항

- 협력회사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(주)파트론 전/현직 임직원, 관련 공무원, 기타 (주)파트론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등 또는 그의 가족 및 이와 관련된 제 3 자에게 (주)파트론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, 제공, 약속할 수 없다.
 - 금전, 유가증권, 선물,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익
 -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
 - 출장시 편의 제공, 개인 휴가 지원 또는 업무목적 이외의 협찬 등의 편의
 -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,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행위
 -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, 취업보장, 공동투자 등의 행위
 -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일체의 금전적, 비금전적 편의 취득 행위
- 협력회사는 (주)파트론에서 부정이나 비리로 퇴직한 임직원을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(주)파트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서는 안된다
- 협력회사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, 부패방지관련 국제 협약 및 (주)파트론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3 장 규정위반의 처리

1. 위반사항의 신고

- 협력회사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(주)파트론 인사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인사총무팀은 신고 받는 즉시 윤리경영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윤리경영팀은 해당 건에 대해 내부감사 규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한다.
-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 단,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.

2. 위반사항의 처리

- ㈜파트론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 회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, 해당업체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경고, 재발방지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협력회사 혹은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전후의 사정을 살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유지에 노력한다.

제 4 장 부 칙

1. 시행시기

- ① 본 윤리규범은 2021년 01월 01일부로 시행한다.